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서울시장 후보님
발 신 위 단체
담 당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한대식 정책부장, 02-497-7888)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제 목 서울시 공공 CCTV에 대한 의견 전달의 건
날 짜 2011. 9. 29. 시행 (총 1 쪽)

1. 우리 단체들은 지하철, 택시, 버스, 병원,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가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는 데 대하여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3. 이에 귀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시면 무분별한 CCTV 정책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제시된 공약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10월 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 서울시 공공 CCTV에 대한 의견

<회신처>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한대식 정책부장)

전화 02-497-7888, 이메일 collontai@hanmail.net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전화 02-774-4551, 이메일 della.yk@gmail.com

서울시 공공 CCTV에 대한 의견

2011년 9월 29일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버스, 택시, 어린이집, 병원, 지하철 ... 서울 CCTV 과다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민과 노동자 감시용 CCTV는 철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장소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

-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CCTV와 관련한 진정이 최근 크게 늘어났음. 특히 2010년에는 진정과 상담, 민원, 안내 등을 모두 합해 1천132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1건으로 집계됐음. 인권위는 “목욕탕이나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 때문에 생긴 피해와 함께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7).

○ 많은 CCTV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 CCTV 10만7520대 중 서울시내에만 2만3990대가 설치되어 있음. 지하철 플랫폼, 철도, 우체국, 국가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25만5000여대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것은 km²당 39.6대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이데일리 2011. 9. 2).

○ 서울은 CCTV 공화국이라 할 만큼 각종 정책을 CCTV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 서울형 어린이집 안심보육도, 어린이범죄 예방도, 공원안전대책, 지하철범죄 안전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많은 정책이 ‘CCTV 설치’에 집중되어 왔음. 최근에는 지하철 전동차 칸마다 2대씩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서울시, 2011. 9. 1). 그러나 CCTV를 통한 위 정책 목표의 달성 효과는 전혀 입증한 바 없음

- 범죄 예방이나 보육 정책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나 전문인력 지원 등 다른 대안적인 예산 집행이나 행정 지원으로도 달성 가능함에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홍보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CCTV를 선호한 것으로 보임

○ 서울 버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CCTV의 문제가 심각함

- 지난 1997년 서울시의 시내버스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서울 버스 CCTV의 최초 도입 명분인 ‘횡령 방지’는, 교통카드의 대대적인 보급과 더불어 최근 현금요금 수납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더 이상 버스 CCTV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그러나 서울시는 목적을 변경하여 시내버스 CCTV를 근 15년째 계속 설치 및 운영하여 왔음.
- 서울시는 2009년 성희롱, 운전자 폭행 등 범죄 예방 등의 명분으로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토록 각 버스회사에 권고하고 버스회사 평가에 CCTV 설치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설정하여 그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음.
- 지난 4월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약 7,500대 모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통 차량 1대당 전방 투시용, 내부승객 투시용, 오른쪽 측면 출입문 등 3~4곳에 CCTV가 장착돼 있음.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7534대, 일산과 분당 등에서 서울시계를 넘나드는 버스 4874대, 또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오가는 마을버스 1389대 등에 설치된 CCTV는 모두 9만6579개에 이름(이데일리 2011. 9. 2.).
-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으로 도입된 버스 CCTV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민간 버스업자’라는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버스 CCTV가 시민감시와 노동감시에 악용되어 왔음. 2008년 5월 버스 CCTV 녹화를 통해 사장을 욕한 사실이 드러난 버스기사가 해고된 한편 모욕죄로 고소돼 벌금형 100만원이 선고되는가 하면, 다른 기사가 카메라 렌즈를 종이로 가리고 운전하다 해고되는 등 지나친 노동 통제로 논란이 일고 있음(국민일보 쿠키뉴스 2011. 2. 9). 또한 관련 법률에서 공공기관 CCTV 녹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버스 CCTV가 승객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어 시민 감시 또한 심각함(서울경제 2011. 4. 29).

○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논란도 커져가고 있음

- 최근 택시 기사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및 증거 확보의 목적으로 한 택시 CCTV, 일명 ‘블랙박스’가 널리 확대되고 있음.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법인 및 개인택시 9만4,655대를 상대로 현장조사한 결과 전체 65.8%에 달하는 6만2,285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 법인택시는 전체 98.2%(2,212대), 개인택시는 65.0%(6만73대)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9년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법인택시 약 2만 2,700대와 개인택시 2만 3,300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이후

18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자, 나머지 개인택시 약 2만 6,100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했음(보안뉴스, 2011. 3. 24). 2010년 서울시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데 들인 비용은 600억원으로 알려져있음(헤럴드경제, 2011. 6. 13).

- 그러나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서 녹화된 승객의 모습과 대화가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유포 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 블랙박스 영상은 ‘진상 택시 승객’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희화화되고 있음. 또한 노동감시용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음.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본인의 의사 하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치되면서 일부 법인소속 운전자들은 감시당한다는 기분까지 느끼고 있음(아시아경제, 2011. 11. 5).
-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택시 내부 CCTV 설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실내 촬영은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함. 또한 촬영된 영상은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영상을 확인할 경우 경찰관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음(행정안전부, 2010. 12. 7). 그러나 안내문을 부착한 택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어린이집 CCTV로 인하여 아동의 모습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왔음

- 서울시는 ‘안심보육’ 서비스의 명목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를 부착하고 이를 특정업체 IPTV 서비스로 인터넷 전송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음. 본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정책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정책임. 2010년 3월 19일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급된 IPTV는 총 1,188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2,550개소의 46.6%에 달함(2010년 국정감사 서울시 답변).
- 서울시가 특정업체들과 이 정책을 도입한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의혹에 쌓여 있음. 서울시는 위 사업을 SK브로드밴드 측의 제안으로 도입하였으며 일체의 서면 제안서가 없다고 함(정보공개청구 결과). 또한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해온 U-TV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위 IPTV 설치 작업이 시작된 2009년 7월 16일의 전날인 7월 15일에야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도 미필한 업체로 드러났음. 따라서 정책 도입 시점에 해당 사업자가 무자격 업체이고 서면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떠한 절차로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해 왔는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빚음(최규식 의원 서면질의).
- 서울시는 자치구별 IPTV 설치신청 실적을 자치구 특별재정지원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지

표'에 'IPTV 설치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삽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제해 왔음. 그러나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교사와 아동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져 대다수 시설에서 실제 운영되지 않는 등 과행을 겪고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사업은 실제 녹화 및 전송되는 개인정보 당사자들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설장을 통해 교사에게 동의를 강제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원생들과 부모들의 동의절차를 생략하였음. 원생들과 부모들의 동의를 누락한 것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자 해당 사업을 추진 1년 5개월 만인 2010년 9월 경부터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달하였음

■ 대책

- 공공 CCTV를 범죄예방 등 공익을 목적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 내에 부합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공공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합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CCTV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CCTV에 대한 관리통제가 더욱 강화됨.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처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내판 없는 몰래 카메라는 불법이고(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목적 외로 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즉, 서울시의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된 목적으로만 설치하고, 그 설치 위치, 가동 시간, 촬영 범위 등이 모두 목적에 부합해야만 함. 기존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이 법에 따라 새롭게 동의를 받거나, 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용할 수 있음.
-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민과 노동자 감시용 CCTV는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2011. 9. 30 시행)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 공약(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무조건적인 CCTV 설치를 지양하고,
- 공익을 위해 CCTV를 도입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만 설치 및 운영할 것이며,
- 법령에 따른 CCTV 설치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겠음
-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가칭)서울시 CCTV 조례를 추진하는 한편,
-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CCTV는 철거하겠음